

관리 한다.

이로서 성호농장은 출하일령에 도달한 오리는 어느 오리를 망라하고 일괄 작업이 이뤄진다. 다시말해 유통업자가 출하일령에 도달한 오리를 가져갈 때 고르는 일 없이 동별로 일괄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일령의 오리는 어느 오리를 잡아도 균일하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큰오리를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오리를 고르는 일 없이 출하가 이뤄진다.

또 유통업자에게 항상 품질좋은 오리를 출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한 번 거래가 이뤄진 유통업자가 다시 찾을 수 있게하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한 요인되고 있다.

매월 많은 물량의 오리를 문제없이 출하하는 성호농장의 또다른 비결은 품질 좋은 오리를 시세에 관계없이 자기농장의 생산비 개념을 도입, 출하가격을 결정하여 유통업자와 사전상의하에 계획출하한다는 것.

이같은 출하체계는 사육농가는 항상 계획적인 생산 출하를 가능하게 하고 유통업자는 일정 물량의 품질좋은 오리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항상 차질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오리업이 많고 있는 사육과 유통측면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사육농가 유통업자간의 신뢰성 있는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성호농장을 성장발전하게 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오리에 대한 매력에 대해 사육농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타가축에 비해 질병에 강한 장점이 있어 사육관리가 용이하고 자금회전이 빠르다는 것등이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밝힌 손사장은 남을 닮하기 이전에 내 농장의 생산성을 높여 저렴한 가격에 최고품질의 오리를 생산하고 부화, 유통등 거래에 신용을 쌓는 것만이 다변화 하는 경쟁에서 국내 오리사육농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자기만의 농장경영 원칙을 피력했다.

성호농장의 취재를 마치면서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IMF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오리업계 역시 이같은 원칙이 사육 부화 유통에 확산된다면 오리업계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법률상식/ 축산물 가공처리법(98년6월14일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식용 원유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원유라 함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5. 집유라 함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식육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정장육류 양염육류 기타 식육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알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기타 알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모관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 규격 및 표시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농림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한다.)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성분규격이라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5.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용기 등의 규격 및 기준)1.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점인용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 서는 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 1.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또는 용기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등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3 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7조(가축의 도살등) 1.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상 난산 산고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

3. 소 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 처리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 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기준)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장 검 사

제11조(가축의 검사)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 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시 도지사는 장비 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수탁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검사원과 자체검사원) 1.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검사원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자체검사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검사보조원)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자이 허가를 받은 자는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자격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등) 1.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검사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합격표시) 검사원 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 검사 수거) 1. 농림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 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다.

2. 시도지사는 미검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 가공 사용 보관 운반 동결 또는 판매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 수거를 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1.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신 제품 안내

### 새끼오리 온도감지 경보시스템

당협회는 오리사육농가의 새끼오리 육추시설에서 발생하는 온도관리 잘못에 의한 새끼오리 폐사를 줄이기 위한 경보시스템을 제작 공급한다.

이제품은 새끼오리 육추장내에 사육단계별로 일정한 장소에 걸어두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육추장내의 온도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온도감지 경보시스템은 온도설정 및 온도감지기는 본체에 붙여 육추장내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경보기는 관리자 등에 설치하여 이상이 생기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관리자가 조치토록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육추장 관리가 소홀한 시간대에 육추장 온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조치하므로써 관리소홀에 의한 폐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의 대당 가격은 10만원선이며 자세한 문의는 당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